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397
----------	------

2025년 3월 4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2월 3일, 성흠제 의원(찬성자 : 20명)
나. 회부일자 : 2025년 2월 6일
다. 상정일자 : 제328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5년 3월 4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성흠제 의원)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2024.6.28.)에 따른 조직 개편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여 심의위원회 운영의 위상 및 효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1)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부위원장을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신설된 건설기술정책관으로 변경함으로써 위원회 위상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2조제2항)

3.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개요

- 본 개정안은 '24.7.1일자 서울시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기술심사담당관이 새로 신설된 건설기술정책관 산하로 편제됨에 따라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부위원장직을 현행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건설기술정책관으로 변경하여 새로운 조직편제에 부합토록 하려는 것임.

[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의 <u>기술심사담당관</u> 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건설기술정책관</u>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배경

가. 조직개편에 따른 건설기술정책관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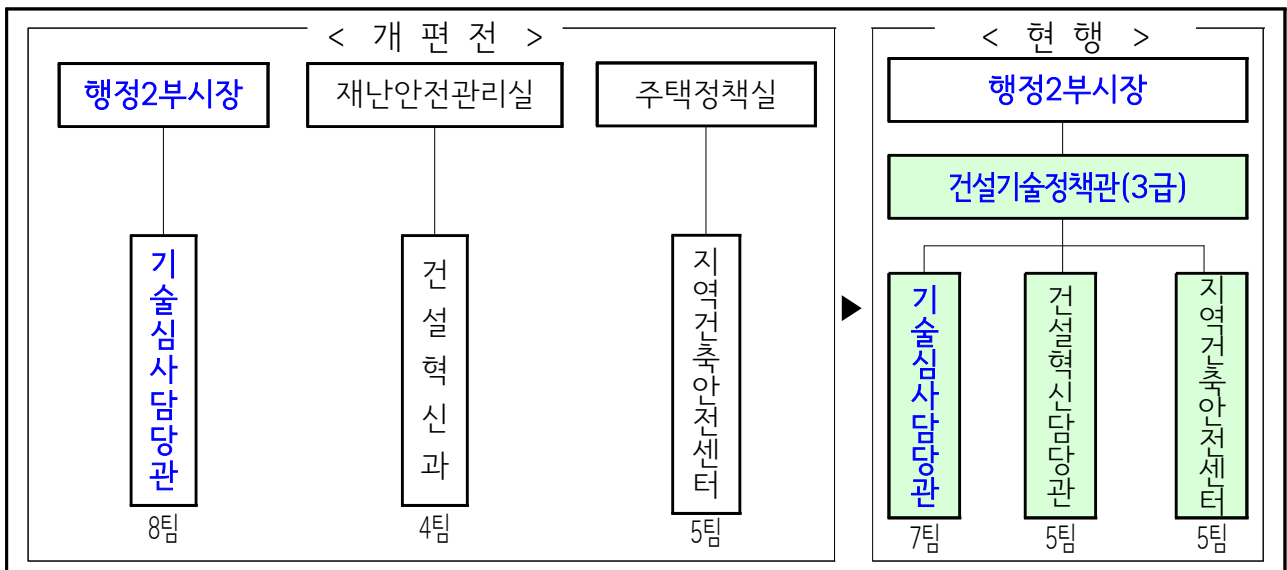
- 서울시는 '23.11.7일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인 「부실공사 제로 서울」 정책을 발표¹⁾한 후 건설안전 확립을 위해 기술 도입 단계

1) '안전도시 도약의 첫걸음, '서울형 건설혁신'으로 「부실공사 제로 서울」 만든다'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_ (2023.11.7.)

부터 건설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부실공사 근절 및 건설산업 선진화를 총괄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인식²⁾한바,

- '24.7.1일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2부시장 보좌기관으로 3급 건설기술정책관을 신설³⁾하였으며, 이에 기존 행정2부시장 직속 보좌기관이었던 4급 기술심사담당관을 건설기술정책관 산하 부서로 편제하였음([표] 참조).

[표] '24.7.1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 조직개편 내역



- 서울시, 7일(화)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부실 오명 벗고 건설산업 재도약 위한 혁신
- (공공건설)안전 직결 주요시공은 '하도급 금지', '동영상 기록' 모든 공공 공사장 확대
- (민간건설)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지원, 감리비 '공공예치' 안전 특화 감리 확보 추진
- 현장 근로자 기술력 향상 및 관리 강화, 발주자협회 설립 등 산업현장 체질 개선도
- 오 시장 "건설산업 혁신과 변화 이끌어내 안전하고 매력 있는 도시 만들어 나갈 것"

2) '건설기술정책관 신설 계획' 서울시 조직담당관-5059 (2024.5.20.)

- 건설안전 확립을 위하여 기술 도입 단계부터 건설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부실공사 근절·건설산업 선진화를 총괄하는 「건설기술정책관」을 신설.

< 부실공사 제로서울 추진개요 >

·추진과제(大 8개) : 부실공사 업체 초강력 제재, 주요공종 하도급 전면 금지, 감리의 현장감독 시간 확보, 민간공사 관리 사각지대 해소, 민간공사 감리 독립성 확보, 현장근로자 시공능력 향상, 가격중심 입찰제도 철폐, 서울건설산업발주자협회 설립

3)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보좌기관)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대변인, 홍보기획관을 두고, 행정(1)부시장 밑에 여성가족실, 글로벌도시정책관, 비상기획관, 미래청년기획관을 두며, 행정(2)부시장 밑에 미래공간기획관, 디자인정책관, 건설기술정책관을 둔다. <개정 2024.6.28.>

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구성 현황

- 위원회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5)에 따라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법정 위원회로서, 당연직 위원장인 행정2부시장과 부위원장인 기술심사담당관을 포함하여 20개 전문분야⁶⁾의 300명 이내(심의위원, 임기 2년)로 구성하여 산하에 5개 소위원회(소위원장:기술심사담당관)를 두고 있음([표] 참조).

-
- 4)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①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생략)
 -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며**, 특별심의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지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0명(특별시의 경우에는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지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6. (생략)
 - ③ 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 1. 중앙심의위원회,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 ④ ~ ⑨ (생략)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심의위원회 및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6)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전문분야** : 교통, 계약관리, 토질 및 기초, 설계VE리더, 토목구조, 철도, 도로, 토목시공, 환경, 상하수도, 조경,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플랜트설비, 건축기계설비, 전기전력설비, 신호 및 통신, 수자원개발, 안전관리

[표]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개요

□ 관련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 제3조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기능

□ 위원회 구성현황



○ 소위원회별 심의 현황

구분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설계심의분과 소위원회	계약분쟁자문 소위원회	건설기술자문 소위원회	설계경제성검토 소위원회
심의대상	심계심의, 공사기간 적정성심의, 입찰방법심의, 입찰안내서심의, 용역발주심의, 정밀안전진단심의,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심의	설계적격심의 (일괄·대안·기술제안입찰)	계약분쟁자문	설계심의 사후평가·공사발주전 심의 등	설계의경제성 등 검토
소위원장	주관부서 4급 이상 공무원(기술심사담당관)				

■ 개정안 검토의견

- 안 제2조제2항은 위원회 부위원장 직위를 현행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건설기술정책관”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 이는 '24.7.1.일자로 시행된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라 4급 기관인 기술심사담당관이 새로 신설된 3급 건설기술정책관 산하로 편제되었고, 이에 부합하도록 위원회 부위원장 직위를 현행 기술

심사담당관(4급)에서 건설기술정책관(3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며,

- 이를 통해, 현행 제6조제3항7)에 따라 기술심사담당관이 위원회 부위원장직과 더불어 5개 소위원회 위원장직을 겸함으로써 인한 직제상 혼재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어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됨.

7)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자문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2. 제3조제1항제3호의 사항 :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
3. 제3조제2항제1호의 사항 :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
4.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
5. 제3조제3항제1호의 사항 : 설계경제성검토소위원회

② 소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안전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시 또는 시 소속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소위원회의 기능 또는 안전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⑧ (생략)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함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397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2월 03일

발 의 자: 성함제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규남, 김성준,
김원태, 남창진, 박승진,
박영한, 박철성, 서상열,
오금란, 왕정순, 유정희,
이상훈, 이영실, 이원형,
이종태, 이종환, 정준호,
최민규, 홍국표 의원(20
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2024.6.28.)에 따른 조직 개편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여 심의위원회 운영의 위상 및 효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부위원장을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신설된 건설기술정책관으로 변경함으로써 위원회 위상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정함. (안 제2조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 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술심사담당관”을 “건설기술정책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구성) ① (생략)</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의 <u>기술심사담당관</u>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p>1. ~ 3. (생략)</p> <p>③ ~ ⑤ (생략)</p>	<p>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건설기술정책관</u>-----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부위원장을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신설된 건설기술정책관으로 변경함으로써 위원회 위상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안 제2조제2항)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병준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2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